

發明·考案의 企業化促進方案

<下>

黃二南

<修習辨理士>

2. 技術導入과 發明考案의 實施

先進國과 後進國의 明白한 差異는 經濟力의 여하에 따라 가를 나는데 그중에서도 技術力의 差異가 크게 差異한다. 工業發展의 次序는 先進技術의 導入 및 消化改良이므로 各產業分野別로 技術導入現況을 檢討하여 外國技術이 後進國에 移轉될 때 어떠한 形態에 어려한 條件으로 上陸하는지를 파악하여 보고 國內產業技術開發에 얼마나 寄與하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業種別	技術導入內容 (單位: 件)					
	區分	Know-How	圖面工業所有權	示方書	其 他	合 計
農業 및 畜產	—	—	1	8	9	
鑄 工 業	15	25	624	707	1,371	
食 品	—	—	9	15	24	
塑 製 紙	—	—	6	7	13	
紡 織 · 織 物	—	—	6	16	22	
化 學 · 纖 維	1	—	15	24	38	
窯業 · 시멘트	2	—	13	23	40	
精 油 · 化 學	3	11	111	136	261	
製 藥	—	—	16	15	31	
金 屬	—	5	44	85	136	
電 子 · 電 氣	—	—	122	147	273	
機 械	—	1	254	187	445	
造 船	—	5	1	16	32	
其 他	—	3	17	36	56	
社會間接資本	—	7	15	65	87	
通 信	—	—	12	26	38	
電 力	—	1	3	29	33	
建 設	—	6	—	10	16	
合 計	21 (1.0)	32 (2.2)	640 (43.6)	780 (53.2)	1,467 (100)	

資料 : 技術導入現況(經濟企劃院 1962~1979)

以上과 같이 先進國의 技術의 우리나라에 導入된 現況을 검토하여 보았는데 1962~1979年 까지 導入된 技術 1,467件中 그 内容을 보면 特許 · 實用新案 · 意匠 ·

商標에 關聯된 技術이 640件으로 43.6%가 되고 Know-How가 1.0%, 圖面示方書가 2.2%이며 技術情報나 技術資料提供, 技術指導以外에 其他項目이 52.3%를 차지함으로써 技術導入 50% 이상이 工業所有權을 中樞로한 核心技術이 아니고 주변 기술로서 技術의 進步에 기여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次後 技術導入政策을樹立함에 있어 보다根本의이고 先進된 技術을 選別의으로 導入할 수 있는 與件의 造成이 必要하다.

3) 發明考案의 企業化問題點

① 不實權利의 增加

韓國內 工業所有權의 出願增加는 年 20% 以上이 되고 있으나 真正한 技術의 權利設定이 아니고 基本特許에서 파생된 지엽적인 權利가 많이 設定되므로 基本特許가 實施되지 않는 限 주변 特許는 實施될 可能성이 회박하다. 특히 最近 들어 企業間의 競爭이 치열해 지면서 商品廣告의 目的上 特許權을 形成하는 事例가 빈번하여 집으로써 實施되지 않는 權利가 增加하고 있다. 이러한 不實權利는 또한 善意의 發明意慾을 감퇴시킬 수 있는 素地가 있어 審查時에 철저한 調査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不實權利가 없어지면 自然 登錄된 權利는 實施가능하다는 말이 되므로 철저해야 한다.

② 政策의in 支援의 未備

先進國은 2백년 전부터 發明장려事業을 國家가 主導하여 온 때문에 國家나 企業 · 個人的 우수한 發明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個年計劃 첫째에 始作한 發明장려 사업의 근거인 發明保護法이 初期에는 그런대로 施行되었으나 稅收의 결합으로 因하여 死文化된 法으로 만들고 말았다. 法의in 肉마침이 없는 發明장려사업은 그 效果를 期待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發明保護法을 補完하여速히 施行하여 많은 發明考案者들이 惠擇을 볼 수 있도록 立法을 서둘러야 하겠다. 또한 發明을 장려할려면 政府의 組織과 機能만으로 效果를 期待하기 어려우므로 發明을 장려하고 企業化도 促進할 수 있는 振興

機關이 必要한데도 우리나라의 現實은 그렇지가 못하다. 아울러 政府에서는 租稅減免이나 事業資金의 支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III. 發明考案의 企業化促進方案

1. 研究開發投資환경의 造成

先進國은 土着化된 術技을 基盤으로 研究開發投資를 꾸준히 해나가므로 後進國과의 技術격차를 더욱 뚜렷하게 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研究開發投資 환경의 造成이 未備된 나라 일수록 政府次元에서 對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先進國의 R & D 投資費가 GNP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反面 한국은 0.6% 水準에 머물고 있으므로 先進國과 技術開發競爭은 不可能한 狀態라고 速斷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發明과 考案이 企業化되기 위해서는 그것 自體가 우수해야 하고 경쟁력이 있어야만 事業性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므로 政府次元의 技術開發投資 환경 造成이 時急한 果題로 대두되고 있다. 最近의 特許出願 추세를 보면 한국내에 外國人의 權利設定이 80%를 상회하고 있어 現行추세로 持續되면 선진국의 技術隸屬化가 될 可能性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政策方向의 設定

體系의이고 持續的으로 發明考案을 創出해 내려면 政府도 면밀한 檢討가 이루어진 후에 진흥이나 장려를 하는 전담기관을 정하여 推進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발명을 장려하는 사업은 各機關 나름대로 꾀나가고 있으나 전혀 계획성이 없고 발명장려를 一時的・展示的 効果를 위한 事業에 단념하고 있다. 政府에서 벌이고 있는 장려사업들을 보면 科學技術處의 全國科學 전람회, 特許廳의 우수特許施賞, 총무처의 公務員提案審查制度 等 行政官廳에서 서로 類似한 業務를 수행함으로써 行政의 낭비는 물론 效率的인 발명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民間部門에서 보면 某新聞社의 初中學生 發明競進大會・某團體의 新技術展示會等 어느 것이 진정한 발명고안의 진흥인지 区分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政府의 관광기관도 統一할必要가 있고 또한 民間部門도 發明振興機關을 設置하여 官民이 合同으로 汎國民의 發明思想앙양 및 發明考案의暢達을 위한 政策方向의 設定이 時急하다. 또한 영세한 發明家의 保護方案도 講究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個人學生等 比較的 財力이 없는 사람은 發明考案에 參與할 資金이 없으므로 아이디어만으로서 사장되는例가 많다. 하물며 研究開發에着手도 하지 못한 단계에

서 企業화의 代案은 찾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3. 關聯法의 補完

現行 發明保護法은 租稅減免의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없으므로 死文化된 法律이 되고 말았는데 이의 補完이 時急하다. 물론 현행 技術開發促進法에도 新技術의 保護가 있기는 하나 受惠範圍가 너무 협소하고 法自體의 運用을 科學技術處가 主管하고 있으므로 發明考案과 連結이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發明考案을 實施해보기 위한 試作品의 支援方案이 全無하므로 發明保護法을 면밀히 檢討하여 부활이 要請된다. 그나마 多幸스러운 것은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法”이 탄생하여 서서히 發明考案의 基盤을 形成해나가고 있기는 하나 根本的對策은 될 수 없으므로 特許廳이 政府의 次元에서 發明考案을 장려할 수 있는 機關의 設立이 必要한 時期에 到來했다.

4. 發明考案의 獎勵 및 資金確保

現行 政府에서 技術開發資金을 企業의 事業內容에 따라 融資를 해 주고 있으나 그 受惠의 幅이 너무나 적으므로 効果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擔保가可能な企業中에서도 選別하여 資金支援을 小額으로 하고 있는데 1979年 70억 원, 1980年 50억 원으로 1件당 천만원 以上 5억 원 以下로 制限하고 있고 대출조건은 3년거치 5년상환이다. 지속적인 發明考案의 長期事業을 하려면 첫째 資金確保가 先決問題이므로 政府側의 이해와 協調에 의한 基金의 확보가 時急하다.

5. 新技術企業化事業에 대한 支援強化

技術開發促進法上 明示된 수혜범위는 국산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 限하여 투자금액의 100分의 8 또는 100分의 10(국내에서 生산 또는 제조된 機資材를 사용한 경우)에相當하는 금액을法人稅額 또는 所得稅額에서 挑除하여 주고 있으나 이것은 너무나 수혜범위가 좁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新技術의 企業화의 경우는 全技術을 對象으로法人稅나 所得稅의 減免惠擇을 주어야만 新技術의 企業화가 容易하다. 아울러 新技術의 製品에 대한 保護도 부여 받아야 할 것이다.

- 参考文獻
1. 特許廳年報 '79
 2. 技術開發促進法(科學技術處)
 3. 科學技術年鑑 '80()
 4. 開發途上國의 科學技術開發戰略
(천병우著)
 5. 特許協會誌('79~'80)
 6. 工業所有權研修教材(特許協會) <完>